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03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윤준병 · 이정현 · 박민규
이병진 · 이성윤 · 김동아
김기표 · 손 술 · 권칠승
서영석 · 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들은 국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사업별 또는 직종별/업종별/단체협약 등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실제 독일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협약에 기반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이는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닌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방법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이하 “업종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서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결정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u>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u> <u><신 설></u>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 ----- ----- ----- <u><후단 삭제></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 <u>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이하 “업종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u>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영 방법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 -----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으로 정한 <u>금액을 말한다.</u>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	제5조(최저임금액) ① ----- ----- <u>금액으로</u> <u>서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포함한다</u> -----

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 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